

명예회원 추대 및 예우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농공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 정관 제7조 제3호의 명예 회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명예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.

1. 학회 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자
2. 학회 관련 과학기술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
3. 기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

제3조(추대) 회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명예회원 대상자를 이사회에 승인을 거쳐 총회의 결의로 추대한다.

제4조(임기) 명예회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.

제5조(예우) 명예회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학회 연회비 및 각종 학술행사 참가비 면제
2. 학회 회무 보고
3.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예우

(부칙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정 2010년 04월 15일